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	2022. . .	
연 월 일	(제 회)	

도 시 철 도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시점 명확화(안 별표2)
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시점을 “행정처분일”에서
“적발일”로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0. 7. ~ 11. 16.)

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I 제2호 후단 중 “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”을 “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2] 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7조 관련) I. 일반 기준 1. (생 략) 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<u>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</u> 기준으로 한다.	[별표2] 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7조 관련) I. 일반 기준 1. (현행과 같음) 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<u>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</u> 기준으로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133